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10호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81호(2018.09.06.)로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및 지구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82호(2018.09.06.)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66호(2019.05.30.)로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된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장

I.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45-5번지
- 면 적: 6,316.4㎡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2018년 9월 6일

3. 사업의 종류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 칭: (주)당산동청년주택피에프브이 외 1인
- 대표자 성명: 이 성 제
-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83, 306호 (당산동2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서울시청 서대문별관 6층 공공주택과(02-2133-6296)와 영등포구청 주택과(02-2670-36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없음)

- 명 칭: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45-5번지
- 면 적: 6,316.4㎡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하여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주)당산동청년주택피에프브이 외 1인
- 대표자 성명: 이 성 제
-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83, 306호(당산동 2가)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 사업기간: 지구지정일 ~ 2022년
-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및 주택금융자 등

4.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5.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

1) 수용인구(변경)

구분	기정	변경
수용인구	923.3명	900.9명

2) 주택건설계획: 496세대

구분	주거형	세대수 (세대)	비율 (%)	수용인구 (인)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공임대 주택	17 TYPE	21	4.2	21	21	2.3	2.3	역세권 청년 주택 건설
	26 TYPE	8	1.6	16	16	1.7	1.8	
	33 TYPE	26	5.2	68.9	68.9	7.5	7.6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37 TYPE	10	2.0	26.5	26.5	2.9	2.9	공급
	41 TYPE	22	4.4	66	58.3	7.1	6.6	
	소계	87	17.5	198.4	190.7	21.5	21.2	
	17 TYPE	217	43.8	217	217	23.5	24	
	26 TYPE	24	4.8	48	48	5.2	5.3	
	33 TYPE	70	14.1	185.5	185.5	20.1	20.6	
	37 TYPE	56	11.3	148.4	148.4	16.1	16.5	
	41 TYPE	42	8.5	126	111.3	13.6	12.4	
	소계	409	82.5	724.9	710.2	78.5	78.8	
	합 계	496	100.0	923.3	900.9	100.0	100.0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 변경사유 :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정착 확대 및 셰어하우스 운영·관리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3인 셰어형 타입(41 TYPE 64세대)을 신혼부부 타입으로 변경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변경없음)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 게제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사항 (변경없음)

-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 (2) 용도지구 결정: 변경없음
 - (3)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게제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 (1)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조서 : 변경없음
- (2)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공간적범위 결정조서 : 변경없음
- (3)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결정조서 : 변경없음
- (4)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건축물 조서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사항

- 가) 획지에 관한 사항
 - (1)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2) 획지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건축물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 (2)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 (3)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라) 공공기여 계획 결정 (변경없음)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해당 없음

3. 방재계획 (변경없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변경없음)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공공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변경없음)

가) 계획기준 및 근거

- 공공기여 내용: 공공시설 설치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 세부기준: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준용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